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최진섭 의원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O 발의일자 : 2012년 6월 4일

O 회부일자 : 2012년 6월 5일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1조, 제2조).
- 나.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안 제3조)
 - 1) 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 2) 제외대상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주민청구 조례안도 도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 첨부함.
- 다.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안 제4조)
 - 1)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 기재
 - 2)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함.
 - 3)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함.
- 마.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함(안 제5조).
- 바. 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협의(안 제6조)
 - 1)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 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 가능하게 함.
 - 2) 비용수반 입안 시 세입 및 예산 업무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함.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며,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이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